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52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임미애
남인순 · 이상식 · 이개호
이수진 · 강준현 · 한정애
박균택 · 서미화 · 황명선
전종덕 · 오세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난방 기기 설치·교체 및 냉방·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항).

주요내용

가.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차원에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나. 냉방·난방 기기의 보급·설치 및 교체,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난방 복지사업 등 지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개선”을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에어컨, 히터 등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의 보급 및 설치 지원
- 나. 노후 냉방·난방 기기의 교체 지원
- 다. 냉방·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 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방·난방 복지사업
- 마. 그 밖에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u>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u>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에어컨, 히터 등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의 보급 및 설치 지원</u> 나. <u>노후 냉방·난방 기기의 교체 지원</u> 다. <u>냉방·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u> 라. <u>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연계한 냉방·난방 복지사</u> <u>업</u>
	<u>마. 그 밖에 폭염, 한파 등</u> <u>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u> <u>필요한 사업</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